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1.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김정환 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553호

다. 제출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2.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595호

다. 제출일자 : 2019. 3. 29.

라. 회부일자 : 2019. 4. 3.

**II. 제안사유**

**1.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사

상자 지원사업)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관리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 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1.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의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 라목신설)

### 2.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 가. 나눔카가 배차를 위하여 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을 발행받는 경

우 해당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제1항제12호), 기존의 월정기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삭제함(현행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나.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25조의4)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제13호)

라. 나눔카에 대한 월정기권 요금 면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IV. 참고사항

### 1.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4. 8 ~ 15

- 제출의견 : 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수정가결

- ▶ 주차장 조례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유공 부상자 본인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상이자에 대하여 감면 적용하고 있음
- ▶ 따라서,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측면에서 의상자 본인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상자는 서울시 의사상자 146명('19.1월 기준) 중 의상자는 61명으로, 장애인 중복여부 관련 자료는 없음(복지정책과 확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음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2.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2. 21 ~ 3. 13

- 제출의견 : 없음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1.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 참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주차요금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의사상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할 것임

-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에 대해서 주차요금 8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및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임
- 다만, 현행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은 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고, 주차요금 감면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 중 “의사자유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사자유족에게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 다른 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2.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나눔카 월 정기권 주차요금 면제, 공영주차장 등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나눔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으로 주차요금 결제 시 주차요금 10%를 할인코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 나눔카 주차요금 면제 관련(안 제7조제1항제12호 및 별표1의 비교 제10호 관련)

- 서울시는 2개 사업자와<sup>1)</sup> 협약을<sup>2)</sup> 통해 나눔카 4,688대를<sup>3)</sup> 1,444개소의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카 1대당 하루 평균 1.2회<sup>4)</sup>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 : 서울시 나눔카 운영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구분	총 합계		서울시 공영 및 공공기관		자치구 공영 및 공공기관		공동주택		일반 민간시설	
	지점 (개소)	차량수 (대)	지점 (개소)	차량수 (대)	지점 (개소)	차량수 (대)	지점 (개소)	차량수 (대)	지점 (개소)	차량수 (대)
운영규모	1,444	4,688	64	217	294	583	302	678	784	3,210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별표1]〈비고〉제10호에 따라 나눔카의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50% 할인하는 사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매년 1억 78백만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한시적인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나눔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충분이 이해되나 서울시가 2003년 2월 나눔카 서비스 최초 도입 이후 나눔카 시설과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승용차 이용억제라는 당초 나눔카 도입 목적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음

1) 나눔카 사업자 : (주)그린카, (주)쏘카

2)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서(2018.5.1.~2019.4.30. / 나눔카 2기 3차년도 협약서)

3) 나눔카 총 4,688대 중 전기차 274대(5.8%) 운영 중

4) 나눔카 1회 평균 4시간 11분 이용



- 또한,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 나눔카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나눔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의무화 관련(안 제25조의4 관련)

- 나눔카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해진 장소에 차량이 위치해야 하고, 정해진 주차면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가 필요한 바,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나눔카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가 10면 이상일 때 최소 1면 이상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칫 나눔카 이용 수요가 부족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장소까지도 불필요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는 바, 관련 수요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적정 규모의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주차요금 할인 관련(안 제7조제1항제13호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sup>5)</sup>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5) 참고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10%를 감면할 경우 52백만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됨

확산하기 위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한시적인 주차요금 감면 정책도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 시민에 대한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음

- 다만,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카드 이용에 비해 결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차장 내 혼잡이 유발될 수 있으며, 현재의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유인주차장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